포르투갈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포르투갈 공화국(Portuguese Republic)
2. 수도 : 리스본(Lisbon, 51만명)
3. 인구・면적 : 1,082만명(2015년), 92,391㎢(한반도의 약 2/5)
4. 공용어 : 포르투갈어
5. 1인당 GDP : 19,759불(2016년)
6. 독립일 : 1143(포르투갈 왕국), 1910. 10. 5.(공화국 수립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이원집정제, 반(半) 대통령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Portuguese Republic

2. 연혁

○ 1911. 위헌심사를 허용하는 헌법 제정

○ 1982. 헌법 개정 -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

3. 구성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, 부소장(Vice-President)을 포함한 13인의 재판관(Justice)으로 구성

○ 재판관 10인은 국회에서 2/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, 나머지 3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10인의 재판관들이 선출

- 재판관 중 적어도 6인은 다른 법원의 판사 중에서 선출
- 나머지 재판관은 법학자(jurist) 중에서 선출

○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고, 연임 불가

○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, 임기는 4년 반이고 재선 가능

○ 재판관 자격 : 참정권을 가진 포르투갈 국민 중에서 법관 또는 법학분야의 석·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

4. 권한

(1) 규범통제

① 사전적 규범통제

-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되기 전의 법률과 조례 및 비준되기 전의 국제조약 등의 위헌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

② 추상적 규범통제

- 법률과 법규명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위헌·위법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대통령, 국회의장, 총리, 옴부즈만, 법무부장관, 국회의원 1/10 이상이 청구

③ 구체적 규범통제

- 위헌을 이유로 법원이 법률 적용을 거부한 경우나 소송절차 중에 위헌여부가 문제가 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 당사자나 검사가 청구

(2) 대통령과 관련된 권한

① 대통령의 사망 및 영구적·일시적인 신체이상에 관한 확정결정

② 대통령의 일시적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불가 확정결정

③ 대통령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시 해임판결

(3)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심판

(4) 선거소송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선거사건

②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요건의 위헌·위법여부 심판

(5) 정당관련 권한

① 기관의 인종차별주의나 파시즘 채택을 한 정당해산심판

② 정당과 사회단체의 당헌, 명칭, 약어, 합병, 상징물 등의 합법성 판단 및 해산명령

5. 심리 및 결정

○ 사전적 규범통제의 경우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명을 위해 회부된 후 8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

○ 선거법, 주민투표법, 국방법, 계엄법과 같은 조직법규에 대하여는 대통령 이외에 총리와 1/5 이상의 국회의원도 사전적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

○ 사전 위헌심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은 대통령이 국회에 환부하여 거부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및 출석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공포하여야 함

○ 사건의 심리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(Plenary session)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(Chamber, 4인의 재판관 및 소장 혹은 부소장)에서 함

○ 재판부는 규정에서 정한 기일에 정기적으로 모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재판관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함

○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는 소속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

○ 가부동수일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결정. 단 부소장이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는 경우는 부소장이 결정

○ 지정재판부의 위헌심판이 선례와 반대되는 경우는 전원재판부에 상고 가능

○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재판관은 반대이유를 제시할 수 있음

○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·사 단체를 기속함

6. 기타사항

○ 위헌이라는 이유로 하급법원에서 국제조약, 법, 혹은 규제에 담긴 규범을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,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된 법률을 하급법원에서 적용하는 경우, 하급법원에서 국제조약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률에 담긴 규범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위헌심사를 청구하여야 함

7. 연락처

○ 주　　소 : MORADA Rua de "O Século" nº 111
1249-117 Lisboa
Portugal

○ 전화번호 : +351 213 233 600

○ 팩스번호 : +351 213 233 649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tribunalconstitucional.pt/tc/index.html

※출처: 외교부
포르투갈 헌법
베니스위원회 CODICES
(2017. 12. 작성)